

국적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지만 현재는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한다면 국적회복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동포나 사할린 동포 등 대한민국 국적보유가 불분명한 사람은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1
1. 국적 알아보기	4
1.1. 국적 이해하기	4
1.1.1. “국적”이란?	4
2. 국적의 취득	6
2.1. 출생 및 인지에 의한 취득	6
2.1.1. 출생, 인지	6
2.2. 귀화에 의한 취득	9
2.2.1. 귀화의 종류	9
2.2.2. 귀화허가의 절차 및 취소	12
2.3. 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17
2.3.1. 국적회복	17
3. 국적의 선택	23
3.1.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23
3.1.1. 국적선택의 의무	23
3.1.2. 국적선택의 신고	24
4. 국적의 포기 및 상실	29
4.1.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29
4.1.1. 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29
4.2.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34
4.2.1. 국적의 상실	34
5. 국적의 판정	39
5.1. 대한민국 국적의 판정	39
5.1.1. 국적판정의 신청 및 취소	39

1. 국적 알아보기

1.1. 국적 이해하기

1.1.1. “국적”이란?

국적·영주권은 구별됩니다.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국적”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국적법」 제1조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참조 및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국적	영주권
-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시민권과의 구별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차이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외동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함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재외동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은 출생, 인지 등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적의 취득방식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

국적의 취득	「국적법」 근거 조문
출생에 의한 취득	제2조
인지에 의한 취득	제3조
귀화 (일반, 간이, 특별)에 의한 취득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수반 취득	제8조
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제9조

2. 국적의 취득

2.1. 출생 및 인지에 의한 취득

2.1.1. 출생, 인지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흐름도

[국적법 제3조]

1 인지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

- 법률혼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 국민인 부의 기본증명서에 자녀 인지사실 기재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

3 신고 수리

출입국·외국인관서

- 친자관계(유전자 검사) 등 요건 확인 후 신고 수리

4 고시 및 통보

출입국·외국인관서

-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5 외국국적 포기 등

출입국·외국인관서

-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적법」 제10조에 규정
※ 외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국적취득 후 지체 없이(3개월 내)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1년 내에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6 주민등록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취득-인지>

취득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제26조, 「민법」 제4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일 것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신고방법

국적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취득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인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3조제3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9조제1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취득 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적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 국적취득 신고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취득>](#)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적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1인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위 내용에 따라 국적취득을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제2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2. 귀화에 의한 취득

2.2.1. 귀화의 종류

일반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귀화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

다음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일반귀화를 위한 귀화요건 중 아래의 귀화요건만을 모두 갖추면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 참조).

대상요건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귀화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를 위한 귀화요건 중 아래의 귀화요건만을 모두 갖추면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참조).

대상요건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위 1. 또는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귀화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특별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다음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일반귀화를 위한 귀화요건 중 아래의 귀화요건만을 모두 갖추면 특별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

찾기 쉬운 생활법령

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대상요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귀화요건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귀화에 따른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 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귀화\(일반, 간이, 특별\)](#)>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2.2. 귀화허가의 절차 및 취소

귀화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 허가 흐름도

(국적법 제4조~제7조)

1 신청 및 접수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접수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면접 심사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결혼 이민자들은 종합평가 면제 가능
-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3 귀화 요건 심사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체류 동향 조사 실시
 공통 : 체류상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 확인
 일반 : 입양의 진정성 등 확인
 혼인귀화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 확인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 심사

4 심사 결정

법무부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5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출입국 · 외국인관서)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6 고시 및 통보

법무부

- 관보고시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7 외국국적 포기 등

출입국 · 외국인관서

-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외국국적포기 :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 (영사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출입국 · 외국인 관서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적법」 제10조에 규정
 ※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혼인귀화 허가자 등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8 주민등록

- 주소지 읍 · 면 · 동 사무소(주민센터)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귀화(일반,간이,특별)-간이귀화(3년이상거주)>

신청방법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25조의2제1항 본문).

귀화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참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귀화\(일반,간이,특별\)>](#)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다만,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으로 납부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본문).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제2호).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가 실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본문).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종합평가 면제대상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면접심사 면제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 및 귀화요건 심사에 따른 조화·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귀화 요건 심사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임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5제2항) .

국민선서 면제대상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2.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귀화\(일반, 간이, 특별\)](#)>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는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의 제한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조화·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다만, 종합평가를 면제받은 경우나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귀화허가의 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허가의 취소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2.3. 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2.3.1. 국적회복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제8조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제8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제8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국적회복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회복 하

1

신청 및 접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코리아.go.kr)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 특별공로자, 우수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2

국적회복 요건

- 필요 시 체류동향 조

심사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조사 내용 등을 종합

3

심사 결정

법무부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
최종 심사 결정

4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출입국 · 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

- 국적회복 허가를 받
공관의 장)앞에서 국

5

고시 및 통보

법무부

- 관보고시
• 대법원 등 관계기관

6

외국국적 포기 등

출입국 · 외국인관서

- 국적 취득 후 1년 내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65세 이상 영주귀국

7

주민등록

- 주소지 읍 · 면 · 동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회복-일반회복>

신청방법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함)

※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회복-일반회복](#)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다만,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국적회복 요건 심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4제1항).

※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5제1항).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4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5제2항).

국민선서 면제대상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2.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0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회복](#)>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는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적회복허가의 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허가의 취소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3. 국적의 선택

3.1.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3.1.1. 국적선택의 의무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법적 처우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국적법」(법률 제10275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 국적선택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4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한 경우 ▪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3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국적의 상실>](#)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1.2. 국적선택의 신고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그 뜻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선택의 절차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본문).

복수국적자로서 위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참조).

신고방법

국적선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선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29조제6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선택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만 해당함) ▪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해당자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만 해당함)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국적선택 신고 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선택절차](#)>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그 뜻을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

단,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이탈에 관한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및 별표 1).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출생 이후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2.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3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신고방법

국적이탈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이탈 신고 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이탈절차](#)>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의 수리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국적의 이탈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이탈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제4호).

국적이탈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이탈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허가의 취소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4. 국적의 포기 및 상실

4.1.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4.1.1. 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9조제2호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29조제5호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수료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에서 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0조제2항 참조,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제5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1.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함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본문 참조,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청장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수수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8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응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에서 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1년 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위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1개월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의 재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신고방법

국적의 재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 「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9조제4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국적재취득 신고 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취득-재취득>](#)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적재취득 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4.2.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4.2.1. 국적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신고방법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제26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국적상실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 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국적상실신고 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상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상실 및 양도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8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제2항).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습니다.

국적상실의 결정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4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대한민국 국적보유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국적상실 시기

위에 따라 국적상실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4제2항).

외국 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적보유 가능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참조).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신고방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적보유 의사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보유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 국적보유신고 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보유](#)>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적보유 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은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참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국적의 선택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 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선택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참조 및 제12조 참조).

- ※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선택의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적보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보유](#)>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국적의 판정

5.1. 대한민국 국적의 판정

5.1.1. 국적판정의 신청 및 취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참조).

국적 판정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 판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국적 판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 판정 신청서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 판정 신청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판정](#)>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판정절차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판정에 필요한 의견조회 및 자료요구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국적보유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정취소처분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적보유 판정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취소사실의 고시

찾기쉬운 생활법령

법무부장관은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